

##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0. 10. 4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0. 10.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10. 1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 가. 제안이유

-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할 경우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입법예고대상(안 제2조)
  -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관련 제도 등
- 입법예고 방법(안 제4조)
  - 부천시보 및 인터넷 게재
  - 기타 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등 활용
- 입법예고 기간(안 제5조)
  - 20일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한다.

###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p>○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나열하지 않았는지?</p> | <p>○ 공감합니다.</p> <p>○ 도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p>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별 첨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번호  | 관련 제381호               |
| 의결년월일 | 2000. 10. 20<br>(제81회) |

제출년월일 : 2000. 10. 19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장훈령(규정)을 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함은 부당하므로 "폐지규정"삭제

2. 주요골자

○ "부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조항을 삭제(부칙 제2항)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부 칙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폐지규정)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② 삭 제              |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381호                  |
| 의결년월일 | 2000. 10. 20<br>(제81회) |

제출년월일 : 2000. 10.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할 경우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입법예고대상(안 제2조)
  -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관련 제도 등
- 입법예고 방법(안 제4조)
  - 부천시보 및 인터넷 게재
  - 기타 신문·방송 컴퓨터 통신 등 활용
- 입법예고 기간(안 제5조)
  - 20일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한다.

[수정안 포함]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 주관실·과·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 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법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를 예시하면 별표와 같다.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부천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부천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은 의견접수처·의견제출기간·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안)필수입법예고대상(예시)

| 구 분                 | 조 례  |
|---------------------|--|
| 주민 이해와 관련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조례</li> <li>• 도시재개발사업조례</li> <li>•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li> <li>• 주택재개발사업조례</li> <li>•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li> <li>• 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li> </ul> |
|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관련조례</li> <li>•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li> <li>•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원·국민관광지등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li><li>• 도로점용료징수조례</li><li>• 묘지·화장장등사용료징수조례</li><li>• 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li></ul>   |
|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li><li>•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li><li>• 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li><li>• 수도급수조례</li><li>• 하수도사용조례</li><li>• 주차장조례</li><li>• 시장사용조례</li><li>•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li></ul>   |
|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li><li>•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li><li>•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li><li>•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li><li>• 장학금지급조례</li><li>• 시민복지관설치운영조례</li><li>• 노인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li><li>• 시민회관조례</li><li>• 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li></ul> |
|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주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문화재보호조례</li><li>• 문화상조례</li><li>• 포상조례</li></ul>  |